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: 33
번호 :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.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분뇨관련 수거대행업체의 물량격감,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등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수료 상향 조정
- 나.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
- 다. 행정절차법 개정('98. 1. 1부) 으로 해당규정 삽입

2. 주요골자

- 가.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상향 조정
 - ①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: 10ℓ 당 당초 200원 → 320원 (60% ↑)
 - ② 정화조 청소 수수료
 - 당초 : 기본료 (0.75㎥당) 16,200원 → 16,840원 (4% ↑)
 - 당초 : 초과료 (0.1㎥당) 1,170원 → 1,250원 (7% ↑)
- 나.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67호 규정에 따라 조정개정
- 다.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함.

3. 관계법령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
- 환경부 예규 제167호 ('97. 12. 4)
- 행정절차법 제2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별표2”를 “별지1”과 같이 한다.

제17조 제1항중 “별표3”을 “별지2”와 같이 한다.

제17조 제2항중 “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”를 “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, 과태료 부과처분시에는 위반사실, 위반내용,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 1”

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(제8조 제1항 관련)

[별표2]

| 구 분 | 부과기준 | 수 수 료 | 적용기준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분뇨수집· 운반 수수료 | 10ℓ | 32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 |
| 정화조청소 수 수 료 | 기본(0.75㎥ 이하) | 16,84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|
| | 초과(0.1㎥당) | 1,25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소된 오니(오수포함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|
| | 활증 (개별 청소시) | 기본 및 초과료의 5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. |

“별지2”

[별표3] 과태료 부과기준(제17조 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한다.
- 다.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.
- 라.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로 한다.
- 마.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.
- 바.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.

2. 개별기준
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 이후 |
| 1. 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(법 제5조, 제24조제4항) | | | |
| 가. 오수정화시설 | | | |
| (1) 1일 처리용량이 100㎥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| | | |
| (ㄱ) 방류수 수질기준 5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100 | 300 | 500 |
| (ㄴ) 방류수 수질기준 50%이상 1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200 | 400 | 600 |
| (ㄷ) 방류수 수질기준 100%이상 2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300 | 500 | 700 |
| (ㄹ) 방류수 수질기준 200%이상을 초과한 경우 | 400 | 600 | 800 |
| (2) 1일 처리용량이 100㎥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| | | |
| (ㄱ) 방류수 수질기준 5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200 | 400 | 600 |
| (ㄴ) 방류수 수질기준 50%이상 1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300 | 500 | 700 |
| (ㄷ) 방류수 수질기준 100%이상 2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400 | 600 | 800 |
| (ㄹ) 방류수 수질기준 200%이상을 초과한 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나. 합병전화조 | | | |
| (1) 방류수 수질기준 5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(2) 방류수 수질기준 50%이상 1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(3) 방류수 수질기준 100%이상 2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(4) 방류수 수질기준 200%이상 초과한 경우 | 400 | 500 | 600 |
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이후 |
| 다. 단독정화조 | | | |
| (1) 처리용량 10㎥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(2) 처리용량 10㎥ 이상 50㎥ 미만인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(3) 처리용량 50㎥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라. 축산폐수처리시설 (신고대상) | | | |
| (1) 방류수 수질기준 2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(2) 방류수 수질기준 20%이상 5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(3) 방류수 수질기준 50%이상 1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500 | 600 | 700 |
| (4) 방류수 수질기준 100%이상 초과한 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2.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, 변경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아니한 자(법 제9조 제2항, 제9조의2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) | | | |
| 가. 설치신고 미이행자 | | | |
| (1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(3) 단독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나. 변경신고 미이행자 | | | |
| (1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(3) 단독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다. 폐쇄신고 미이행자 | | | |
| (1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(3) 단독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이후 |
| 3. 오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등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(법 제12조, 제26조 또는 제33조 제2항) | | | |
| 가.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자 | | | |
| (1) 단독정화조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200 | 400 | 500 |
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400 | 600 | 800 |
| (3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(4)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(5)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200 | 300 | 500 |
| 나.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| | | |
| (1) 단독정화조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500 | 500 | 500 |
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800 | 800 | 800 |
| (3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1000 | 1000 | 1000 |
| (4)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1000 | 1000 | 1000 |
| (5)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300 | 500 | 500 |
| 4. 오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·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린 자(법 제13조 제1항, 제13조의2 제1항, 제22조, 제27조) | | | |
| 가. 단독정화조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500 | 500 | 500 |
| 나. 합병정화조의 경우 | 800 | 800 | 800 |
| 다.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1000 | 1000 | 1000 |
| 라. 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1000 | 1000 | 1000 |
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이후 |
| 5.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(법 제13조제2항) | 500 | 700 | 1000 |
| 6. 오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한 자(법 제14조 제2항, 제28조 제3항 또는 제33조의2 제1항) | | | |
| 가.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| | | |
| (1) 1일 처리용량이 200㎥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2,0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| 500 | 700 | 1000 |
| (2)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| 300 | 600 | 1000 |
| (3)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기1회 이상 | 500 | 700 | 1000 |
| 나.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| | | |
| (1) 처리용량이 5㎥ 미만인 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, 오수정화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100 | 300 | 500 |
| (2) 처리용량이 5㎥ 이상 10㎥ 미만인 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·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200 | 400 | 600 |
| (3) 처리용량이 10㎥ 이상인 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인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(4)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다. 1일 처리용량이 100㎥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의 방류수를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| 400 | 600 | 1000 |
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이후 |
| 라.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·발생이 되는 경우 | 300 | 500 | 700 |
| 마.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(허가대상) | 100 | 200 | 500 |
| 바. 기타 오수처리시설 운영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| 200 | 300 | 500 |
| 7.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(법 제33조 제3항) | 500 | 700 | 1000 |
| 8.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자(법 제15조 제1항) | 500 | 700 | 1000 |
| 9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(법 제24조 제2항, 제4항) | | | |
| 가.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나.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10. 분뇨등관련영업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(법제35조 제3항) | 300 | 400 | 500 |
| 11. 분뇨등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(법제35조 제3항) | | | |
| 가.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| 500 | 700 | 1000 |
| 나.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(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) | 300 | 500 | 700 |
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이후 |
| 12. 분뇨등관련영업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(법 제35조의2 제2항) | 300 | 400 | 500 |
| 13.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 (법 제35조3의 제1항) | 500 | 700 | 1000 |
| 14.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(법 제42조 제2항) | 300 | 400 | 500 |
| 15.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(법 제42조 제3항) | 500 | 700 | 1000 |
| 16.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(법 제43조 제1항) | 500 | 700 | 1000 |
| 17.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, 분뇨등관련 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,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(법 제44조) | 300 | 400 | 500 |
| 18.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휴업,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(법 제45조) | 300 | 400 | 500 |
| 19. 사업자,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자,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보고를 한 자(법 제46조 제1항) | 300 | 400 | 500 |
| 20.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(법 제25조의3 제2항) | 200 | 300 | 500 |

[별표2]

신·구조문대비표

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(제8조 제1항관련)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구 분 | 부과기준 | 수수료 | 적용기준 | 구 분 | 부과기준 | 수수료 | 적용기준 |
| 분뇨수집 · 운반수수료 | 10 ℥ | <u>200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○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 | | 10 ℥ | <u>320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|
| 정화조청소 | 기본(0.75 ㎥이하) | <u>16,200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| | 기본(0.7 5㎥이하) | <u>16,840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|
| 수수료 | 초과(0.1 ㎥당) | <u>1,170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된 오니(오수포함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| | 초과(0.1 ㎥당) | <u>1,250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|
| | 할증(개별 청소시) | 기본 및 초과료의 5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. | |(...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|

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3]

과태료 부과기준 (제17조 제1항 관련)

| 현 행 | | | 개 정 안 | | | |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1. 오수정화시설·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 대상)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(법제5조) | | | | 1. 오수처리시설 또는 (법제5조, 제24조제4항) | | | |
| 가. 오수정화시설 | | | | 가. | | | |
| (1) 1일 처리용량이 100㎥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| | | | (1) | | | |
| (2) 방류수수질기준 5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100 | 300 | 500 | (2) | ... | ... | ...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50%이상 1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<u>300</u> | <u>500</u> | <u>700</u> | (4) | <u>200</u> | <u>400</u> | <u>600</u>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100% 이상 200%미만을 초과 한 경우 | 500 | 700 | 900 | (4) | 300 | 500 | 700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200% 이상을 초과한 경우 | 700 | 900 | 1000 | (4) | 400 | 600 | 800 |
| (2) 1월 처리용량이 100㎥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| | | | (2) | | |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50% 미만을 초과한 경우 | 200 | 400 | 600 | (4) | ... | ... | ...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50% 이상 100%미만을 초 과한 경우 | 400 | 600 | 800 | (4) | 300 | 500 | 700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100% 이상 200%미만을 초과 한 경우 | 600 | 800 | 1000 | (4) | 400 | 600 | 800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200% 이상을 초과한 경우 | 800 | 900 | 1000 | (4) | 500 | 700 | 1000 |
| (신설) | - | - | - | 나. 합병정화조 | | | |
| (신설) | - | - | - | (1) 방류수수질기준 50%미 만을 초과한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(신설) | - | - | - | (2) 방류수수질기준 50%이 상 100%미만을 초과하 경우 | 200 | 300 | 400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(신설) | - | - | - | (3) 방류수수질기준 100% 이상 200%미만을 초 과한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(신설) | - | - | - | (4) 방류수수질기준 200% 이상 초과한 경우 | 400 | 500 | 600 |
| 나. 점화조 | | | | 다. 단독점화조 | | | |
| (1) 처리용량 100㎥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| 100 | 300 | 400 | (1) 10㎥..... | ... | 200 | 300 |
| (신설) | - | - | - | (2) 처리용량 10㎥이상 50 ㎥미만인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(2) 처리용량 100㎥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| 300 | 500 | 600 | (3) 50㎥..... | ... | 400 | 500 |
| 다. 축산폐수처리시설 (신고대상) | | | | 라. | | | |
| (1) 방류수수질기준 20%미 단을 초과한 경우 | 100 | 300 | 400 | (1) | ... | 200 | 300 |
| (2) 방류수수질기준 20%이 상 5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300 | 500 | 600 | (2) | ... | 400 | 500 |
| (3) 방류수수질기준 50%이 상 100%미만을 초과한 경우 | 500 | 700 | 800 | (3) | ... | 600 | 700 |
| (4) 방류수수질기준 100% 이상을 초과한 경우 | 700 | 900 | 1000 | (4) | 500 | 700 | ... |
| | | | | 이상 초과한 경우 | | |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2.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 | | | | 2.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, 변경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아니한 자(법 제9조제2항,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 | | | |
| 가. 설치신고 미이행자 | | | | 가. | | | |
| (1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<u>(신설)</u> | 1000 | 1000 | 1000 | (1) | 300 | 400 | 500 |
| (2) 정화조의 경우 | 200 | 500 | 500 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나. 변경신고 미이행자 | | | | (3) 단독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(1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<u>(신설)</u> | 500 | 1000 | 1000 | (1) | 300 | 400 | 500 |
| (2) 정화조의 경우 | 100 | 300 | 500 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<u>(신설)</u> | | | | (3) 단독정화조의 경우 | ... | 200 | 300 |
| <u>(신설)</u> | - | - | - | 다. 폐쇄신고 미이행자 | | | |
| <u>(신설)</u> | - | - | - | (1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200 | 300 | 400 |
| <u>(신설)</u> | - | - | - | (2) 합병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<u>(신설)</u> | - | - | - | (3) 단독정화조의 경우 | 100 | 200 | 300 |
| 3. 오수정화시설,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(법 제12조,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) | | | | 3. 오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등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.....) | | |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가.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자 | | | | 가. | | | |
| (1) <u>점화조</u> 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200 | 400 | 500 | (1) 단독점화조, | ... | ... | ... |
| (신설) | | | | (2) 합병점화조의 경우 | 400 | 600 | 800 |
| (2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500 | <u>500</u> | <u>500</u> | (3) | ... | 700 | 1000 |
| (3)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500 | <u>500</u> | <u>500</u> | (4) | ... | 700 | 1000 |
| (4)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200 | 300 | 500 | (5) | ... | ... | ... |
| 나.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| | | | 나. 사용한 자 | | | |
| (1) <u>점화조</u> 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500 | 500 | 500 | (1) 단독점화조, | ... | ... | ... |
| (신설) | - | - | - | (2) 합병점화조의 경우 | 800 | 800 | 800 |
| (2)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<u>800</u> | <u>800</u> | <u>800</u> | (3) | 1000 | 1000 | 1000 |
| (3)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1000 | 1000 | 1000 | (4) | ... | ... | ... |
| (4)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300 | 500 | 500 | (5) | ... | ... | ...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4. <u>오수정화시설, 정화조 또 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·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긴 자(법제13조제1항, 법제13조의2제1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</u> | | | | 4. <u>오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.....</u> | | | |
| 가. <u>정화조, 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(신설)</u> | 500 | 500 | 500 | 가. <u>단독정화조</u> ,..... | ... | ... | ... |
| 나. <u>오수정화시설의 경우</u> | 800 | 800 | 800 | 나. <u>합병정화조의 경우</u> | 800 | 800 | 800 |
| 다. <u>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 처리시설(허가 대상)의 경우 (신설)</u> | 1000 | 1000 | 1000 | 다. | 1000 | 1000 | 1000 |
| | | | | 라. | ... | ... | ...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5. <u>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 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(법제13조제2항)</u> | 500 | 700 | 1000 |

| 현 행 | | | 개 정 안 |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5. 오수정화시설, 점화조,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, 관리한 자(법제14조제2항,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) | | | | 6. 오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처리조를 그 관리기준에 | | | |
| 가.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| | | | 가. | | | |
| (1) 1일처리용량이 200㎥이 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2,000인 이상인 점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| 100 | 200 | 500 | (1) | 500 | 700 | 1000 |
| (2)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| 100 | 200 | 500 | (2) | 300 | 600 | 1000 |
| (3)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이상 | 300 | 500 | 1000 | (3) | 500 | 700 | ... |
| 나.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| | | | 나. | | |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|
| (1) 처리용량이 <u>10㎥ 미만인</u> <u>정화조 · 오수정화시설,</u> <u>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</u> <u>대상) 및 간이축산폐수</u> <u>정화조의 경우</u> | 100 | <u>100</u> | 500 | (1) <u>5㎥ 미만인</u> <u>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</u> | ... | <u>300</u> | ... |
| (2) 처리용량이 <u>10㎥ 이상인</u> <u>정화조, 오수정화시설의</u> <u>경우</u> <u>(신설)</u> | <u>300</u> | <u>500</u> | <u>800</u> | (2) <u>5㎥ 이상 10㎥ 미만인</u> <u>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</u> (3) 처리용량이 <u>10㎥ 이상인</u> <u>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</u> <u>오수정화시설의</u> | <u>200</u> | <u>400</u> | <u>600</u> |
| (3) 축산폐수처리시설(허가 대상)의 경우 | 500 | <u>700</u> | 1000 | (4) | ... | ... | ... |
| 다. 1일처리용량이 <u>100㎥</u> 이 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<u>500인</u> 이 상인 정화조의 방류수를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월2회이상 실시하지 아 니한 경우 | <u>300</u> | <u>500</u> | <u>1000</u> | 다. | <u>400</u> | <u>600</u> | <u>1000</u> |
| 라. 악취가 심하게 발산되 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 식 · 발생이 되는 경우 | <u>500</u> | <u>1000</u> | <u>1000</u> | 라.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 충이 외부로 번식 · 발생 이 되는 경우 | <u>300</u> | <u>500</u> | <u>700</u> |
| 마.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 산폐수처리시설 관리일 지를 작성하자 아니한 경우(허가대상) (신설) | 100 | 200 | 500 | 마. | ... | ... | ... |
| | - | - | - | 바. 기타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| <u>200</u> | <u>300</u> | <u>500</u>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(신설) | - | - | - | 7.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 치한 자(법제33조 제3항) | 500 | 700 | 1000 |
| 6.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 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(법제15조제1항) | 500 | 700 | 1000 | 8. (.....) | | | |
| 7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하여 사용한 자(법제24조제 2항 또는 제24조 제4항) | | | | 9.(....., 제4항) | | | |
| 가.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| 500 | 700 | 1000 | 가. | 300 | 400 | 500 |
| 나.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| 300 | 500 | 800 | 나. | 200 | 300 | 400 |
| (신설) | - | - | - | 10. 분뇨등관련영업자의 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 지아니하거나, 허위로 변경 신고한 자(법제35조제3항) | 300 | 400 | 500 |
| 8. 영업구역, 기타 필요한 조 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 자(법제35조제3항) | | | | 11. 분뇨등관련영업의 영업구 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 반한 자(법제35조제3항) | | | |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
| 가.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| 500 | 700 | 1000 | 가. | ... | ... | ... |
| 나. <u>대행사의 규칙사유로 개별</u> <u>청소년이행통지 기간경과 후</u> <u>15일이내 분뇨를 처리하지</u> <u>않은 경우(천재지변등 부득</u> <u>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</u> <u>제외)</u> <u>(신설)</u> | 100 | 300 | 500 | 나. <u>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</u> <u>아니한 경우(.....</u> <u>12. 분뇨등관련영업의 권리</u> <u>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</u> <u>지 아니한 자(법제35조의</u> <u>2제2항)</u> | 300 | 500 | 700 |
| 9.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<u>분뇨관련 영업자</u> <u>(법제35조제6항)</u> | 300 | 500 | 1000 | 13. | 500 | 700 | ... |
| 10.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법제42조제2항) | 300 | 500 | 1000 | 14. | ... | 400 | 500 |
| 11.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(법제42조제3항) | 200 | 400 | 1000 | 15. | 500 | 700 | ... |
| 12.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(법제43조) | 500 | 800 | 1000 | 16. | ... | 700 | ... |

| 현 행 | | | 개 정 안 |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|-----|
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 부 과 대 상 | 부과금액(천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이후 | | 1차 위반 | | |
| 13.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 한 자(법제44조) | 300 | 500 | 1000 | 17.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 활용하는 자, 분뇨등관련영 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 폐수의 수집장소,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·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기재한 자.(.....) | ... | 400 | 500 |
| 14. 휴업·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(법제45조) | 300 | 500 | 1000 | 18.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휴 업·폐업 등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(.....) | ... | 400 | 500 |
| 15.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(법제46조제1항) | 300 | 500 | 1000 | 19. 사업자, 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재활용 하는자, 분 뇨등관련영업자로서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, 허 위로 보고를 한 자(.....) | ... | 400 | 500 |
| 16. 축산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가 권리·의무 승계신고를 아니한 자 (법제25조의3제2항) | 200 | 300 | 500 | 20.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 ·의무를 승계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자.(.....) | ... | ... | ... |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7조 (과태료 부과) ①생략</p> <p>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, 위반내용, 과태료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7조 (과태료 부과) 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 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, 과태료 부과 처분시에는 위반사실, 위반내용, 과태료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